

「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년 7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2년 7월 18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7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7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유통산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고, 위촉직위원회 구성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를 적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원 중 “농업축산과장”을 “귀농·귀촌 업무 담당 과장”으로 변경(안 제3조)
-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 간사 “귀농귀촌담당”을 “귀농·귀촌 업무 담당 팀장”으로 변경(안 제3조)
- “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”를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남섭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
귀농·귀촌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고
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를
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.

○ 주요내용은

안 제3조제3항의

“농업축산과장”을 “귀농·귀촌 업무 담당 과장”으로
“귀농귀촌담당”을 “귀농·귀촌 업무 담당 팀장”으로
변경하고자 하며

안 제3조제3항 후단을 신설하여

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
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현행화
하고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위원회 성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
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임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“농업축산과장”을 “귀농·귀촌 업무 담당 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귀농귀촌담당”을 “귀농·귀촌 업무 담당 팀장”으로 한다.

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<u>각호</u>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, <u>농업축산과장</u>, 기술지원과장, 산림과장으로 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귀농귀촌담당</u>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<u>귀농·귀촌 업무 담당 과장</u>-- ----- . <u>이 경</u> <u>우,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<u>귀농·귀촌 업무 담당 팀장</u>-- ----- .</p>